

건축법 개정案에 대한 합동회의 개최

지난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건설부 관계자와 본협회 건축법 개정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법 개정案의 문제점 시정을 위한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本協會는 지난 7월2일 건설부 공고 제80호로 건축법 개정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건축법 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에 따른 Task Force Team 운영에 참여하는 한편 鄭煥鎬법제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건축법개정대책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허가 및 사

용승인 등의 민간기관 위임에 대한 개선”, “조사·검사업무 대행제도 개선” 등에 대한 본협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대책소위원회와 이사회등에서 정리된 개선안을 지난 20일과 23일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Task Force Team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건설부 초안에 대하여 건설부와 본협회의 이견 사항에 대해 중점토의한 이번 건설부와 협동회의에서 토의된 건축법 개정案에 대한 주요 협의사항과 조정결과 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합동회의의 토의내용

입안조문	건설부의견	본협회의견	조정 의 견
제10조 【건축계획의 승인】	○ 당초 대형건축물 사전예고제 사항을 수정·보완, 건축계획 사전승인으로 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의 사전검토제를 반영한 것으로 ○ 2천년대를 내다 본 One Stop Service 개념에서 허가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 설치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다.	○ 안 착안 자체는 건전하고 좋으나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는 건축계획을 사전승인 받고 또 건축허가를 받게 되므로 사실상 2중 허가제이다. ○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할 때도 인접건물과의 분쟁방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하고 있다.	○ One Stop Service 차원에서 착안한 것으로 2천년대를 내다 본案임. ○ 대한건축사협회측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겠음.
제24조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등의 대행 등】	○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단체로 할 것을 요구하나 법의 체계상 모범에 민	○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는 설계 및 감리의 연장이므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가 하고 조사 및 검사업무는 타 민간기관에서 할	○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 하나 ○ 건축법에 기관을 명시한다는 것은 타법과의 형평상 법제처,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건설부 합동회의

입안조문	건설부의견	본협회의견	조정 의 견
	간기관을 명시할 수 없다. 다른 법의 경우를 보면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은 조사 및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로서 그러한 조직이 갖추어진 기관을 상상하면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은 알수 있다.	경우 감리와 검사 기관이 상이하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도시설계의 수립 및 작성에 있어서 도시설계는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로 명시하였으니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기관을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단체로 명시 요망함.	법무담당관실에서 반대할 것이므로 어려움.
제72조 【현장조사 및 검사자의 공무원 의제】	○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자에게 권한을 주는 대신 벌칙을 강화하자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기에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것이 신설된 것임.	○ 입법예고(안)에는 형사처벌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던 것이 신설된 것은 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기관을 대한건축사협회로 지정 요청하게 되므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인지?	○ 대한건축사협회측의 추측과는 전혀 다르며 “공무원 의제 조항”은 관계부처 협의시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제30조 【건축감시원】	○ 건물준공후 용도 변경, 불법증축등 위법건물을 방지 하자는 뜻에서 건축감시원 제도를 신설함.	○ 건축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 건물준공후 위법 건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야 함.	○ 건물준공후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감시원 제도로 함.

입안조건	건설부의견	본협회의견	조정 의견
제64조 【도시설계의 수립 및 작성등】	○도시설계는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 공간의 활용에 관하여 작성하며 ○도시설계 정기간은 10년으로 하였음.	○도시설계 작성시 건축물은 높이 및 용도로, 공공시설은 위치 및 규모로 기준을 정하여 작성하고 ○도시설계 제정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	○도시설계 제정기간을 5년으로 하향 조정
제66조 【공개공지확보】	○일정규모 용도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통행인 등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공개공지를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으로 하여 공개공지의 개념을 확대코저함.	○공개공지를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으로 함
제19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자가 공사중 위반사항 발견하였을시 건축주, 시공사에게 서면 통보 사항을 적기에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 요망 ○“미시정시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보고” 사항에서 “지체없이”를 삭제 요망	○본협회의견을 적극 수용 검토기로 함.
입법예고(안) 제19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사 등록】	○입법예고(안)에는 반영하였으나 건설진흥국에서 건설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삭제 하였음.	○건축법에 반영하였다가 건설업법 개정시 반영하면 건축법에서는 삭제할 것.	○건설업법 개정시 꼭 반영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임.

※ 굵은 글씨는 본협회 의견을 반영토록 합의된 내용임.

圖書奇贈

경성제일 고보 및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기술직 및 미군정청 건축서장을 지낸 바 있는 故 張然采씨의 遺品 圖書를 고인의 유지에 따라 차남 장한기씨가 지난 8월3일 본 협회 정보자료실에 기증

하였다.

이번 기증도서는 1918년부터 1938년까지 간행된 건축관련 도서 1백3권 및 조선총독부신축청사 사진자료 및 기타 사진도집 50매로서 건축계의 귀중한 자료들이다.

綜合建設業免許制 積極對處

— 本協會 決死反對기로 —

본 협회는 최근 정부가 UR 협상의 일환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면허제 도입에 대처기 위해 수시로 관계위원회의 개최와 임원협의회를 통한 협회의 대응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 협회의 기본대책으로는 “건축물의 시공(공사업)만을 전담하는 대형건설회사가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대응책이란 미명아래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설계와 공사감리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본 제도의 도입을 결사 반대 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와 관계요로에 접촉, 적극 대처기로 하였다.

본 협회의 본 제도 반대이유와 대정부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반대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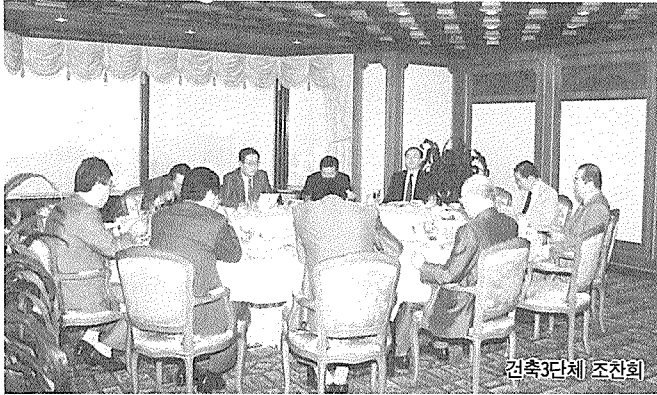
- 대형건설회사가 設計·監理業務를 일괄 수행하면 기업이윤의 추가로 建築文化의 死藏 및 건축물의 질적 저하 초래할 수 있고,
- 건축물은 시공과 設計·監理業務가 반드시 분리 견제되어야 부실건축물을 방지할 수 있다.
- 기술용역의 육성정책에 역행하며 專門分野別 중소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 건축물은 인간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造形藝術 分野로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승시키는 綜合創作 行爲이므로 기업의 영리를 추구하는 건설업자(시공사)가 독점하도록 위임할 수 없다.
• 따라서 建築設計와 工事監理 業務는 建築士가 獨立的으로 遂行 육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의사항

- 建築士사무소와 건설업체간의 同伴者 (Partner Ship) 制度 導入
- 설계의 국외발주시 외국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계획설계에 국한하고 국내건축사로 하여금 실시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케 하는 協同體制의 制度化
- 建築士 高유업무인 설계·공사감리는 현행제도로 보호, 육성되도록 국가의 지원 필요 (금융·세제)

이에 앞서 본 협회는 '89년 12월 본 제도의 공청회(1989. 12. 13. 건설회관 에 참석하여 제도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對정부 건의안을 관계요로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0년 국건축사대회에서는 3천5백여 전 회원의 총의로써 반대결의안을 채택,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였다.



건축3단체 조찬회

建築三團體 朝餐會

本協會는 建築三團體 조찬회를 지난 30일 롯데호텔 아스도홀에서 주최하고 건축계 현안에 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축3단체 회장단 및 행정담당자가 참석한 이날 조찬회에 본 협회는 宋基德회장, 鄭淳虎

부회장, 李永熙서울지부회장, 任仁赫사무처장이 참석하여 본 협회 주요 추진업무 현황 설명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비책, 건축법개정공청회등 건축3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본협회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제8회 理事會

本協會 '90 제8회 理事會가 宋基德회장의 주재로 지난 8월 9일 개최되어 종합건설업면허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종합건설업면허제도에 대한 대책(안) 승인
- 前페이지 記事 참조
- ◆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안) 승인
-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따른

본 협회 의견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건설부에 개진기로 함.

- ◆ 조사, 검사대행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
- 설계와 감리업무는 현행과 같이 각자가 수행토록 하고 조사, 검사업무 또한 본 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계속 수행토록 하되 그 방법을 개선하여 공증번호사사무소와 같이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그룹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함.

市道支部 監事會議

1990년도 제25회 정기총회를 대비한 자체 정기감사가 전국에 걸쳐 실시된다. 금번 정기감사는 지부별로 시도지부 소속 지부 감사가 실시하고 결과보고에 의한 서면감사로 대체하며 미진 지부에 대하여만 현지출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3, 14일 양일간 춘천 리오호텔 회의실에서 각 시도지부 감사 및 실무직원 집체교육이 실시되어 감사방향 및 지침이 시달되었다.

한편 본부 및 각 시도지부 감사 실시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감사기간
본부 : 10월중
지부 : 9월중(지부실정에 따라 선택)
- ② 감사자
본부 : 오운동, 김일영 감사
지부 : 소속지부 감사
- ③ 감사결과 제출
본부 : 1990. 10. 30
지부 : 1990. 9. 30

건축실무 CAD 활용에 관한 세미나

本協會는 국제위원회(위원장 : 金知德)와 업무전산위원회(위원장 : 金昌端) 주관으로 건축실무 CAD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백여명의 CAD 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英國 에딘버러대 교수겸 CAD 연구소 소장인 Aart Bijl 씨와 金正植회원(양우종합건축)이 연사로 등단하여 CAD의 활용 및 관리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건축실무 CAD 활용에 관한 세미나

대전지부 건축사보 교육



大田直轄市 支部(會長 康祐植)

'90 건축사보 교육 실시

大田지부(회장 康祐植)는 지난 31일 대전 카톨릭문화회관에서 '90건축사보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내 건축사보 1백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송승호 지부부회장의 "건축사보 정신교육 및 오늘의 건축현실" 강연과 충남대 박만식교수의 "현대 건축물의 비교분석"의 順으로 진행되었다.